

영등포구의회
제 20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·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6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의 “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정비 권고” 사항을
반영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「서울
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·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」를
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변경(안 제2조제1항)

- 신체장애자용 → 신체장애인용

나. 법제처 발간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전문 정비

-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 →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7조(안 제1조)

- 도로법에 의한 →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(안 제2조제1항)
- 영등포구 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안 제4조)
- 구민 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안 제6조)
- 항 삭제(안 제6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 (법제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7. 13. ~ 8. 2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안 제2조에 “신체장애자용”을 “신체 장애인용”으로 상위법령의 변경된 용어에 따라 정비하였으며

2) 법제처의 [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] 등에 따라

- 안 제1조에 “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”을 “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” 로 변경하였으며
- 안 제2조제2호의 “도로법 에 의한”을 “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”으로 조문을 구체화 하였고,
- 안 제3조에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
- 안 제6조에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”으로 정비하였으며
- 안 제6조제4항은 본 조례 제7조 규정준용으로 삭제함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장애인복지법』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③ "장애인학대"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2.10.22., 2015.6.22.>2조

■ 『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』

제2조(장애와 장애인)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.

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■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』

제5조(구민의 책무) 영등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·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